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

1

회의개요

1. 일시: 2019. 03. 12.(화), 15:05-14:50
2. 장소: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2호 회의실
3. 출석이사: 재적이사 21명 중 12명 참석
 - 회장직무대행: 이장훈
 - 부회장: 박진우
 - 이 사: 김광섭, 김미향, 김용호, 김태정, 변우섭, 심영식, 유정인, 이광수, 이동우, 임종훈
4. 상정안건
 - 전차회의록 초록
 - 보고사항
 - 1) 이사 사임
 - 2)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피감 결과
 -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결과
 - 4) 이OO 前부회장의 징계 무효 소송 진행 경과
 - 5) 2015년 코리아컵 회항비 피항소건 종결
 - 6) 국가대표팀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 7) 국가대표 2월 강화훈련 결과
 - 8)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지도자 선발 결과 및 동계훈련 진행
 - 9) 제18회 아시안게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10) 2019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 사항
 - 1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진행 경과
 - 12) 2018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 심의사항
 - 1) 2019년 국가대표지도자 선발 승인
 - 2) 국가대표 선발 기준 변경 승인
 - 3) 2019년도 국가대표랭킹점수 부여 대회 승인

- 4)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 5)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기타사항

2 논의결과(주요내용)

I. 전차회의록 초록 : 원안접수

1. 2018년도 제9차 이사회
2.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서면결의)
3.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서면결의)

※전차회의록 초록 접수 후, 의장이 국가대표와 관련된 안건이 신속히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앞서 심의사항을 먼저 다루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 전원 찬성하여 심의사항을 먼저 진행함.

II. 심의사항

1. 2019년 국가대표지도자 선발 승인

가. 주요내용

1) 배경

- 대한체육회 2019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원계획

종목	훈련인원				합계	훈련일수	지원분류	비고
	선수	코치	트레이너	전담팀				
요트	21	5	1	1	28	240일 (11개월)	관심지원종목	선수 2명 감소

2) 경기력향상위원회 선발 지도자 명단

번호	세부종목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
1	총괄	감독	김형태	71.04.24	· 국가대표 지도경력 (코치)2011. - 2017. (감독)2018. - 현재.
2	레이저군	코치	김정곤	78.05.09	· 국가대표 지도경력 2014., 2017. - 현재.
3	윈드서핑	코치	송명근	76.03.21	· 국가대표 지도경력 2016. - 현재.
4	49er	코치	정성안	71.11.26	· 국가대표 지도경력 2017. - 현재.
5	470	코치	-	-	- 공석(추후 선발)
6	트레이너		박영진	93.02.08	· LG트윈스야구단 인턴트레이너 (2016. 11. - 2017. 2.) · 요트청소년대표 물리치료사 (2018.04-12.)
7	전담팀		장문영	78.06.27	· 해성고등학교 요트부 감독(2010. 9.-2016. 2.) · 스포츠전문지도사(요트) 2급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2. 국가대표 선발 기준 변경 승인

가. 주요내용

1) 배경

- 대한체육회 2019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원계획

훈련인원				합계	훈련일수	지원분류	비고
선수	코치	트레이너	전담팀				
21	5	1	1	28	240일(11개월)	관심지원종목	선수 2명 감소

2) 국가대표 선발 기준(안) [2019-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19.1.28.)]

- 기존 선수선발 기준과 같이 랭킹 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종목은 유망주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 2019년도 1차 선발전 이후 국가대표 훈련부터 적용한다.

※ 감소된 선수 총원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명단은 이사회 승인 이후 즉시 적용.

번호	종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선수		선수		특이사항	
		남	여	남	여		
1	레이저	5	-	4	-	4순위 유망주로 선발	1명 감소
2	레이디얼	-	2	-	2		
3	RS:X	5	1	5	-	5순위 유망주로 선발	1명 감소
4	470	4	-	4	-		
5	49er	6	-	6	-	3순위 유망주로 선발	
총원		23		21			

- ※ 유망주 선수는 당해 만 23세 이하의 선수 중 랭킹 순으로 선발한다.
 - 2인승 종목의 경우 스키퍼를 기준으로 한다.
 - 나이계산 기준 일은 당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유망주 선수의 나이계산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

3) 참석자 주요 발언

- 2020년 올림픽 이후 아시안게임 체제에 맞춰 선수 정원이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내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당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망주 선발 보다는 상위 랭킹 선수들끼리 상호 보완을 해서 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따라오지 못하는 하위 순위 선수와 훈련하는데 마이너스될 수 있음.
 - > 경기력향상위원장 답변: 언제까지 1순위 선수만 바라볼 것이냐는 의견이 많았으며, 마지막 순위정도는 유망주를 키워서 이 선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자는 취지로 결정되었음.
- RS:X 여자선수를 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경기력향상위원장 답변: RS:X 여자선수 기록을 볼 때 출전한 세계청소년 요트선수권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피니쉬하지 못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데 큰 부담이 있었음. 지도자들의 의견으로 RS:X 여자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제외하였음.
- 보완할 사항은 차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3. 국가대표 선발 기준 변경 승인

가. 주요내용

1) 배경

- 2018-1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18.12.26.)에서 심의·의결함.
- 이사 간담회 (2019.3.08.)에서 논의 함.

2) 2019년도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부여대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내용)

세부종목	대회명	장소 / 일정	비고
전 종목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미정 / 3월 말(예정)	랭킹포인트 부여 (전 종목)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미정(창원시 예정) / 4월~5월(예정)	랭킹포인트 부여 (전 종목)
	제11회 대한요트협회장배	미정 / 5월 중순(예정)	랭킹포인트 부여 (전 종목)
	제32회 대통령기	미정 / 7월 초(예정)	랭킹포인트 부여 (전 종목)
레이저(남)	제10회 한국레이저협회장배	전남 여수 / 6.14.~6.16.	랭킹포인트 부여 (레이저, 레이디얼 종목)
레이저 레이디얼(여)	제2회 한국여자레이디얼선수권	전남 여수 / 6.14.~6.16.	

○ 논의내용

- 2019년도 전반기에 선발전을 진행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하반기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결론

- 상기 목록 중 **2019년 6월 30일(일)전까지 종료되는 대회**를 2019년도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부여대회로 승인한다.
- 한국레이저요트협회장배와 한국여자레이저레이디얼선수권은 아래 조건 충족 시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부여를 승인한다.

[조건]

- 대회 운영요원 명단은 대한요트협회 대회위원회 위원장, 심판위원회 위원장,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선수와 동호인 선수는 별도로 운영(스타트)한다.
- 대회는 2019년 6월 30일(일)전까지 종료한다.

3) 대한요트협회장배 개최불가

(울진군 2019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협회장배 포함) 개최 불가 통보함.(2.26.))

4) 이사 간담회(2018.3.08.) 수정 의견

- 상기 목록 중 **2019년 6월 30일(일)전까지 종료되는 대회**를 2019년도

국가대표 링킹포인트 부여대회로 승인한다. 단,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는 7월 중 개최되더라도 랭킹포인트 부여대회에 포함한다.

- 한국레이저요트협회장배와 한국여자레이저레이디얼선수권 조건 중 경기임원 구성은 대한요트협회가 경기/심판/계측위원장과 TD를 지명하고, 각 위원장이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논의 결론 : 이사 간담회 수정 의견으로 의결함.

4.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가. 주요내용

1) 배경

- 2018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대의원총회에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위하여 심의 필요.

2) 2018년도 결산요약

세 입			세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체수입 ₩200,185,502	찬조금	19,8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443,408,354
	후원금	20,000,000	포상금	20,500,000
	기금과실금	45,893,908	후보선수훈련비	209,513,343
	자체수입	59,891,594	청소년훈련비	133,913,886
	연맹체지정기부금	54,600,000	국제체육교류	13,426,410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단체육회지원) ₩2,101,352,531	국가대표강화훈련	1,252,848,050	전국&국제대회개최	796,634,664
	후보선수육성비	208,282,343	전문인력양성	14,546,609
	청소년선수육성비	133,913,886	국제전문인력사업	39,980,877
	국제체육교류	3,421,295	국내회의개최	6,014,920
	국제전문인력사업비	39,980,877	인건비	230,035,408
	체육지도자	1,200,000	운영비	54,306,693
	경기력향상지원비	164,980,200	생활체육운영비	114,119,890
	회원종목단체지원	164,020,920	연맹체지정기부금이관	54,600,000
	생활체육운영비	114,119,890		
	국내종합대회지원	18,585,070		
보조금 ₩762,115,987	대회지원비	762,115,987		
전년도이월금 ₩-6,860,951	전년도이월금	-6,860,951	차기이월금	-74,207,985
총 계		3,056,793,069	총 계	3,056,793,069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5.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 주요내용

1) 배경

-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서면결의)에서 가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의결함.

2) 2019년도 예산(안) 요약

(가) 기본 예산(안)

세 입			세 출	
관	항	금 액	관	금 액
자 체 ₩340,450,502	찬조금	194,0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398,991,050
	기금과실금	73,096,332	후보선수육성	197,516,700
	자체수입	73,354,170	청소년대표육성	186,651,500
국민체육 진흥기금 (대한체육회) ₩2,144,844,320	국가대표강화훈련	1,225,613,800	국제체육교류	24,197,380
	후보선수육성	191,902,100	학교체육활성화	152,100,000
	청소년대표육성	186,051,500	생활체육활성화	4,500,000
	국제체육교류	5,186,400	전국&국제대회개최	275,640,000
	학교체육활성화	152,0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종합대회지원	20,070,000	전문인력양성	27,70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41,799,600	국내회의개최	16,280,000
	체육지도자	1,200,000	인건비	210,082,000
	경기력향상비	172,000,000	운영비	80,488,607
	회원종목단체지원	149,020,920	2018년 미지급금	74,207,985
보조금 ₩204,860,000	대회지원금	204,860,000		
합 계		2,690,154,822	합 계	2,690,154,822

(나) 추가 예산(안) - 추가 예산 확보 시

관	항	목	금액
국가대표 특별국외전지훈련	3회 파견	항공료 및 임차비 등	81,379,500
후보선수훈련	후보선수 순회지도	수당(트레이너) 및 식비	2,400,000
학교체육활성화	일반학생요트캠프 및 장학금지원	운영비 및 임차료, 장학금지원 등	11,200,000
생활체육활성화	대학생동아리 합동훈련 지원	강사수당 및 임차료 등	2,500,000
전국&국제대회개최	전국대회개최	경기운영프로그램 사용 및 개선, 홍보비 등	50,220,500
운영비	경상비	엠블렘제작	3,300,000
교육사업	교재 및 전문서적 출판	킬보트교본 및 경기규칙해설서 발행	15,000,000
요트40주년 기념	기념식 및 40년사 발간	기념식 운영비 및 요트40년사 발간비	104,000,000
합 계			270,000,000

3) 참석자 주요 발언

- 찬조금 수입을 마련할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봐야 함.
- 예산(안)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 사무처장 직무대행: 예산(안)은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금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일부 자체 비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나. 논의 결론 : 원안 의결

III. 보고사항

1. 이사 사임

가. 주요내용

직위	성명	직업 및 직위	비고
이사	강왕수	강원도요트협회 부회장	사직서 제출 (2019.2.25.)
이사	최강열	전)대한요트협회 실무부회장	사직서 제출 (2019.3.12.)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피감 결과

가. 주요내용

- 정기종합감사 개요
 - 근거: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제26조·제27조, 감사규정 제3조·제11조
 - 기간: 2018.5.30.-6.01.(3일간)
 - 감사인원: 대한체육회 감사실, 외부회계사
 - 감사범위: 2014~2017년 조직운영, 행정 및 예산 집행 실태 등 업무전반
-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

연번	처분 종류	제 목	내 용 요 약
1	시정	단기차입금 및 과실금 운영 부적정	■ 운영자금부족으로 2016.12.30. 300만원, 2017.2.22. 1천만원 차입 후 2017.6.23. 상환 한 것과 관련하여 정관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 2016년 당시 협회 기금의 과실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백만원을 불필요하게 차입하고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를 미지급 처리 후 재적립함.
2	시정	경영공시 부적정	■ 정관 제56조(경영공시)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2014년~2017년 해당 자료가 공시되어 있지 않음.

※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감사 당시 협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이었음.

- 시정 요구 사항

(1) 단기차입금 및 과실금 운영 부적정 관련

(가) 협회 명의로 자금 차입 시 정관에서 정한 절차 준수 바람.

(나) 기금 과실금 등의 재적립 시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적립 바람.

(2) 경영공시 부적정 관련

(가)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정관 제46조와 제56조에 규정한 자료를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 바람.

(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지정하여 관리 바람.

○ 시정 결과

- 경영공시 부적정 관련 : 홈페이지에 별도의 「경영공시」페이지 마련하여 공시 완료. <http://ksaf.org/about/vision/>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결과

가. 주요내용

○ 평가 대상 및 범위

- 대 상: 대한체육회 전체 회원종목단체
(가군 18개, 나군 13개, 다군 10개, 라군 13개, 마군 7개)
※대한요트협회는 “나”군에 속함.

- 평가범위: 2017년도

○ 평가 방법

- 비전제시, 리더십, 주요사업수행 및 선순화 구조 정착, 거버넌스 확립, 통제 및 환류체계 정착 등 15개 항목 평가
- 서면(정성 및 정량평가) 및 대면평가 시행

○ 평가 결과

평가군	단체명	등급	평가점수	나군 평균	전체 평균
나군	대한요트협회	B (양호)	68.88	63.75	66.53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4. 000 前부회장의 징계 무효 소송 진행 경과

가. 주요내용

○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

개최일	결정사항	비고
2018.10.26.	이의신청 기각 (징계효력발생일 2018.10.26.)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해당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함.

○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 채권자: 이OO
-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접수일: 2018.7.09.
- 주 문
 1. 채무자가 2018.6.7. 채권자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 단: 신청 이익이 없는지 여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전의 필요성
- 결 론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일: 2019.1.8.)

○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경과

- 원 고: 이OO
- 피 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접수일: 2018.7.09.
-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06.07.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선고일: 2019.03.21.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5. 2015년 코리아컵 회항비관련 피항소건 종결

가. 주요내용

○ 항소 경위

- 2015년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의 인쇼어레이스(오픈부)에 참가한 경기정의 소유자인 이OO는 대한요트협회 코리아컵조직위원회가 지급한 회항비 액수가 부당하다며 2017년 5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민사 소송을 접수하였음.
- 2018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 선고됨.(원심)
- 원고 이OO는 2018년 2월 25일 항소 접수함.

○ 항소 내용

- 항소인(이OO) 2018.4.12., 2018.7.11. 준비서면 제출
- 피항소인(대한요트협회) 2018.9.13. 준비서면 제출
- 항소인 2회의 변론기일(2018.9.14., 2018.10.19.)에 불출석.

○ 최종 결과 : 항소취하간주 (2018.11.20.)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6. 국가대표팀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

가. 주요내용

○ 개요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요트 국가대표팀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이 신고 접수되어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요트 국가대표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후 우리협회로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음.

○ 대한체육회의 조치요구 사항

- 대한요트협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를 위반한 000 코치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요트협회장은, 000 코치에 대한 징계 조치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7. 국가대표 2월 강화훈련 결과

가. 주요내용

○ 훈련 근거

- 2019-제1차 이사회(서면결의) 심의사항 제1호 2019년 2월 국가대표 훈련 및 지도자 임시 승인
-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1598(2019.02.14.)「2019년도 2월 요트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임시 승인 알림」

○ 훈련 개요

- 기간: 2019. 2. 14. - 2. 28. (15일간)
- 장소: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 참가인원: 총 18명 (감독1, 코치3, 트레이너 1, 전담팀 1, 선수 12)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8.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지도자 선발 결과 및 동계훈련 결과

가. 주요내용

○ 종목 지도자 선발결과

연번	세부종목	이름	소속/직위	비고	선발근거
1	레이저 군	박성진	양운고등학교/코치	-	2019-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2	420	정동수	현화고등학교/코치	2018년 코치	2019-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3	RS:X	이호준	충남해양과학고/코치	2018년 코치	2019-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 2019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결과

- 기 간 : 2019. 2. 10. - 2. 28.(18박 19일)
- 장 소 :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 참가인원 : 총 34명 (지도자 4명, 선수 29명, 자비 참가 지도자 1명)
- 특이사항 : 총 29명의 선수 중 여자선수가 11명이지만 여성 지도자가 없어 합숙 기간 중 여자 선수 관리가 곤란하여 여성 지도자를 섭외하여 파견하며, 수당 및 여비 지원이 없는 자원봉사임.
(근거: 2019-1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19.01.28.)의결 사항)
- 파견 여성지도자 : 방은준
(1998-1999 요트 국가대표, 대한요트협회 및 싱가포르요트협회 근무 외)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9. 제18회 아시안게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주요내용

- 2018년 제9차 이사회(2018.11.20.) 및 2018년 임시대의원총회(2018.12.05.) 요청 사항.
- 「2018 아시안게임 참가보고서」 제출됨.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10. 2019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 사항

가. 주요내용

- 변경 확정 내용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

대회	변경 확정 내용					비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변경 사항 없음.					여자부 1종 신설 요청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변경 사항 없음.					옵티미스트 단체전 폐지, 옵티미스트 초등부, 레이저 4.7, 테크노293 신설 요청
201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	클래스	남자		여자	[기준] - 윈드서핑 혼합오픈 5개부 - 윈드서핑 편&포물러 5개부 - 카이트보딩 오픈 3개부
			청년부	장년부	오픈부	
	1인승 딩기	레이저피코	○	○	○	
		레이저	○			
	윈드 서핑	혼합오픈	○	○	○	
		편&포물러	○	○	○	
	카이트 보딩	오픈	○	○	○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11.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진행 경과

가. 주요내용

○ 배경

2018년 5월 17일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회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준상 당선인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연임을 사유로 인준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유준상 당선인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함.

○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 종료

- 채 권 자: 유준상 / 채 무 자: 대한체육회
- 결정주문: 채무자(대한체육회)가 2018.6.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인준거부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 회장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 종료

- 원 고: 유준상
- 피 고: 1) 대한체육회장, 2)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주문(청구취지)
 - 1)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2) 피고 대한체육회장은 원고를 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 과
 - 1) 판결선고기일(2018.12.14.)
 -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2심) - 진행 중

- 항 소 인(피고): 대한체육회
- 피항소인(원고): 유준상
- 항소일: 2018.12.26.
- 항소취지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유준상 회장 당선자의 회장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 진행 중

- 채권자: 유준상
- 채무자: 1) 대한체육회장, 2)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 신청일: 2018.2.12.
- 신청취지
 - (1)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항소심 채권자(대한체육회)에 대한 인준의사표시 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심문기일: 2019.3.12. 15:10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12. 2018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가. 주요내용

1) 감사 실시 개요

- 회계감사
 - 기 간: 2019.01.31.(목) 1일간
 - 장 소: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올림픽문화센터 1층)
 - 감사인: 회계감사 이기웅
- 행정감사
 - 기 간: 2019.02.19.(화) 1일간
 - 장 소: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올림픽문화센터 1층)
 - 감사인: 행정감사 김우현

2) 감사 결과 보고

- 김우현 행정감사 출석하여 감사보고서를 출석 이사에게 배포하고 총회에 보고하기 전 일부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알림.
- 감사보고서를 출석 이사들에게 배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감사에게 질의하면 감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감사 보고서 행정 감사 의견 (제목)
 - (1) 2018년도 이사회운영과 개최 등 관련 업무 감사결과 보고
 - (2)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3) 대한요트협회 가맹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국가보조금(인건비)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 회계 감사 의견
 - 협회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요트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

3) 참석자 주요 발언

- 전문위원회규정에 선수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심판위원회/기술위원회/대회위원회 규정에 해당 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처에서 임기 확인이 필요함.
- 해양제전 카이트 보딩 관련 문제에 대하여 카이트보딩 협회가 대회를 보이콧한 것에 대하여 질문함.

-> 감사 답변: 대한체육회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였음. 사단법인 카이트보딩 연맹이 있지만 그 단체는 우리협회와 관계가 없는 단체였으며 대회를 보이콧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보았음. 그러나 현재 참가 규정을 볼 때 개인이 참가하는 것이었으며 개인 의사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음.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전문위원회와 관련하여 오늘 총회를 기하여 2년의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회는 새롭게 구성하기로 함.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 함.)
- 감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함.
(의장이 동의를 묻고, 출석 이사 전원 동의 함.)

IV. 기타사항

1. 기타의견

- 가. 최근 이사회 성원에 문제가 있었으며, 2017-2020 임기의 반이 지난 시점에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 용퇴해주길 바람.
- 나. 이사회 소집공고를 조금 더 미리 해주면 참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다.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길 바람.
- 라. 사무처가 절차상의 일을 따지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하는 상황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 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임.

(폐회선언: 14시 50분)